

거창승강기R&D센터 출연 심의(안) - 초고속승강기활성화 지원 -

의 안 번 호	2017-
------------	-------

제출연월일 : 2017. 10. .
제 출 자 : 거창군수

1. 제안이유

-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에 따라, 거창군의회 의결을 거친 후 「거창승강기 R&D센터 초고속 승강기 활성화 지원」 사업에 대한 출연금을 2018년도 거창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, 초고속 승강기를 설치하여 거창승강기 기술력 부각 및 승강기 명품도시 구축

2. 출연개요

- 근거법령
 - 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 제38조 및 제41조
 - 「거창승강기밸리 조성 및 지원조례」 제14조
- 대 상: 한국산업기술시험원(거창승강기R&D센터)
- 사 업 비: 460백만원(군비)
 - 2018년 예산편성 요구사항 (단위:백만원)

사업기간	2017년 예산액	2018년 요구액	재 원 별				
			계	국 비	도 비	군 비	민 간
2018년		460	460			460	

○ 사업내용

- 초고속 엘리베이터 제작 및 설치: 적재하중 24인승, 정격속도 360m/min, 5개 정지층, 티타늄 카 인테리어 마감으로 고급화 실현
- 핵심부품 연구개발 학습기회 제공: 거창승강기밸리 입주기업에 초고속용 승강기 경험으로 핵심부품에 대한 학습기회 제공(거창 승강기밸리 입주기업은 정격속도 150m/min까지 제작가능)

3. 부서의견

- 대부분 승강기 정격속도는 120m/min이며, 240m/min일 경우 우수 기업체로 인정을 받고 있어,
- 거창의 상징물인 거창승강기R&D센터 내 “테스트타워”에 초고속 (360m/min) 승강기를 설치하여 국·내외 바이어 및 관광객, 군민들에게 시승 체험으로 거창승강기 기술력 과시 및 승강기도시로서 자긍심을 높이고, 다양한 잠재 고객들에게 승강기 인지도와 구매 욕구 확산으로 매출증대, 고용창출 등의 산업 활성화 기대 및 거창승강기 명품도시 구축을 위해 2018년 군비 출연금 460백만원 교부가 타당함

4. 참고사항

- 출연 기관현황: 붙임 1
- 관계 법령: 붙임 2

[붙임 1] 출자·출연 기관현황

한국산업기술시험원(거창승강기R&D센터)

설립근거	법률: 산업기술혁신촉진법 41조				전화번호 : 080-808-0114		
					홈페이지 : www.ktl.re.kr		
주요연혁	1966년 : 한국정밀기기센터(FIC) 설립 1983년 : 기업기술지원센터(한국기계연구소부설) 1989년 : 품질평가센터(생산기술연구원부설) 1999년 : 산업기술시험원(한국산업기술평가원부설) 2006년 : 한국산업기술시험원(독립법인 출범) 2015년 :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진주 이전				기관형태 (출연)	기타공공기관 (산업통상자원부 출연기관)	
인원현황 (‘16.12. 현원기준)	계		정규직			비정규직	
	862명		719명			143명	
임원 (‘17.9.기준)	직책 (직책명)	성명 (익명처리)	주요경력 (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)			임기 (법령상 정해진 임기 기재)	
	기관장 (당연직)	이○○	한국산업기술시험원 원장			2017. 10. 26	
	비상임이사						
	비상임감사						
주요기능	(한국산업기술시험원) - 최고의 기술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엔지니어링 컨설팅 기관으로 시험인증과 기술지원을 통한 국가의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 (거창승강기R&D센터) - 승강기 KC안전인증 및 시험평가 지원 / 제품개발 지원/ 해외인증획득 지원 / 수출시장개척 지원 / 네트워크 등 승강기분야 One-Stop 통합지원 솔루션 제공						
자본금 ¹⁾ (단위:백만원)		88,929 (직전연도말 기준)			출자·출연액 (단위:백만원)		-
최근3년간 예산 현황 (단위:백만원)	연도	2015	2016	2017	재무현황 (백만원) ‘16.12.31기준	자산	169,973 (자산 총액)
	예산액	135,317	133,090	-		부채	81,044 (부채 총액)
	지자체 지원액	100	100	-		자본	88,929 (자본금 총액)
경영성과 (단위:백만원) ‘16.12.31기준	총수익				총비용		당기순이익
	133,090				135,109		-2,019

[붙임 2] 관련법령

산업기술혁신 촉진법 (약칭: 산업기술혁신법)

[시행 2017.9.15.] [법률 제14592호, 2017.3.14., 일부개정]

[산업통상자원부](#)(산업기술정책과), 044-203-4515

제38조(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설립 등) ①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산업기술혁신 관련 정책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원(이하 "기술진흥원"이라 한다)을 설립한다.

② 기술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,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

③ 기술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 <개정 2013.3.23., 2013.8.6.>

1. 산업기술혁신 관련 정책연구
 2. 산업기술혁신 관련 중장기 기획 및 성과분석
 3.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
 4. 산업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
 5. 산업기술 전문인력 양성
 6. 그 밖에 [산업통상자원부령](#)으로 정하는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사업
- ⑤ 기술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목적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[대통령령](#)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
- ⑥ 정부는 기술진흥원의 설립·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으며,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[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기술진흥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고 그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.](#)
- ⑦ 기술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「[민법](#)」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제41조(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설립 등) ① 기술혁신성과물의 시험·평가 및 이를 위한 기술 개발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[한국산업기술시험원\(이하 "시험원"이라 한다\)](#)을 설립한다.

③ [시험원에 관하여는 제38조제2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](#) 이 경우 "기술진흥원"은 "시험원"으로, "제3항 각 호의 사업"은 "제2항 각 호의 사업"으로 본다.

거창군 거창승강기밸리 조성 및 지원조례

(기업지원과) (시행일 : 2017.05.10)

(제정) 2009.10.07 조례 제1941호

(전부개정) 2011.08.08 조례 제2043호

(일부개정) 2014.12.31 조례 제2228호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칙 제4조

(일부개정) 2017.05.10 조례 제2367호

제14조(승강기R&D센터 지원) ① 군수는 승강기R&D센터가 승강기산업체의 기술개발 및 장비 지원 등 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